

포항공과대학교 총학생회칙

1986년 12월 03일	제정	2014년 10월 07일	개정
1987년 03월 26일	개정	2015년 11월 29일	개정
1991년 04월 01일	개정	2016년 03월 05일	개정
1998년 11월 04일	개정	2017년 06월 01일	개정
2008년 07월 01일	개정	2017년 09월 07일	개정
2012년 01월 01일	전부개정	2017년 12월 21일	개정
2013년 01월 01일	개정	2018년 12월 09일	개정
2013년 08월 31일	전부개정	2019년 12월 01일	전부개정

제1장 총 칙	1~7
제2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8~13
제3장 의결기구	
제1절 학생총회	14~15
제2절 전체학생대의원회의	16~34
제3절 중앙운영위원회	35~43
제4장 집행기구	
제1절 총학생회장단	44~57
제2절 중앙집행위원회	58~59
제5장 자치기구	60
제6장 전문기구	61
제7장 언론기구	62~63
제8장 특별기구	64
제9장 회칙 개정	65~68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포항공과대학교 총학생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① 본교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자는 본회의 회원이 된다.
②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되며, 정회원과 준회원이 되는 요건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조【학교 운영 참여】 본회는 학생자치의 실현과 회원의 권익 수호를 위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본회 외부와의 관계】 ① 본회는 본교 대학원총학생회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회칙에 의해 승인된 외부 단체와의 협약은 본회 세칙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6조【대표자의 책임과 의무】 ① 총학생회장단, 전체학생대의원회의 대의원, 중앙운영위원, 각 기구의 대표자는 본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각 기구의 협력을 통해 그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총학생회장단, 전체학생대의원회의 대의원, 중앙운영위원, 각 기구의 대표자는 직위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없으며, 본회 및 각 기구 내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총학생회장단, 전체학생대의원회의 대의원, 중앙운영위원, 각 기구의 대표자는 총학생회비를 납부한 자여야만 한다.

제7조【회칙 해석】 ① 본 회칙을 해석·적용할 때는 본회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되거나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회칙 해석의 주체는 회칙해석위원회이며, 그 구성과 절차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2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8조【회원의 권리】 ①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며, 본회는 이를 확인하고 보장하며 발전시켜나갈 의무를 진다.
② 본회의 회원은 회칙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9조【교육권】 ① 본회의 회원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는 부당한 차별로 인해 제한되지 않는다.
② 본회는 회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선거권과 피선거권】 본회의 회원은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1조【운영에 대한 권리】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라 본회의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본회의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생활에 대한 권리】 ① 본회의 회원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본회는 회원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13조 【회비 납부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장 의결기구

제1절 학생총회

제14조 【학생총회】 ①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며,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② 학생총회의 절차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 【학생총투표】 학생총투표를 통한 의결은 학생총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절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제16조 【지위】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대표자를 대의원으로 하는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17조 【구성】 ①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대의원이 되는 요건은 세칙으로 정한다.
② 회원의 열린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린대의원을 둔다.

제18조 【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당해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나, 소속된 각 기구의 자치 규칙에 명시된 바를 따른다.

제19조 【대의원의 의무】 ①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총학생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어야 한다.
②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서 모든 대의원은 상호 동등하고 독립된 지위에서 의사를 표명하고 안건을 심의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각종 외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0조 【의장】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의장 1인을 둔다.

제21조 【회의】 ①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정기회의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회 소집되며, 비 정기회의의 소집요건은 세칙에 따른다.
②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의장은 긴급한 사안이 있는 경우 별도의 소집요구 없이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의결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의장은 세칙에 따라 회의의 소집을 공고하고, 자료집을 배포하여야 한다.

제22조 【의결요건】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회칙 또는 세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회의의 공개】 ①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본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 내용의 공포에 관하여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24조 【안건 발의】 ① 전체학생대의원회의 대의원과 중앙운영위원회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② 본회 회원은 연서에 따라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③ 안건 발의 요건과 절차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25조 【회칙·세칙·규칙】 ①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총학생회칙 제·개정안의 학생총투표 부의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세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
③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회칙·세칙에 반하는 규칙·자치 규칙·내규의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26조 【학생총회·학생총투표】 ①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학생총회 소집요구 및 학생총투표 실시의 결을 할 수 있다.
② 학생총투표의 요건과 절차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27조 【결정·집행·정책】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중앙운영위원회,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특별기구의 결정 및 집행 사항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 【예산안·결산보고서】 ①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를 인준한다.
② 제출된 예산안·결산보고서 중 문제가 있는 경우,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세칙에 따라 해당 기구에 일정 기간 재정을 배분하지 않거나 배분을 보류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 【총학생회비】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총학생회비의 인상·인하를 의결할 수 있다.

제30조 【감사】 ①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언론기구, 특별기구의 사업 전반 및 재정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감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1조 【징계】 ①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언론기구, 특별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회칙을 위배한 경우 세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2조 【총학생회장단 탄핵안】 ①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발의할 수 있다.

1.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
2. 회원 200인 이상의 연서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탄핵안 발의 일주일 이내에 전체학생대의원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③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탄핵안의 학생총회·학생총투표 부의를 심의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2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1인을 상대로는 할 수 없다. 단, 2인 중 1인이 사퇴하거나 궐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 【학교운영참여】 ①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포항공과대학교 학칙의 개정안을 총학생회장을 통해 대학평의위원회에 발의할 수 있다.

②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대학 당국 및 학생단체를 포함한 대학 산하 기구에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③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대학 산하 기구에서 본회의 추천을 받아 활동하는 학생대표위원을 인준하며, 학생대표위원의 임면 절차와 직무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34조 【대의활동】

- ①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본회 차원의 연대 단체 가입·탈퇴 또는 외부 단체와의 협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② 총학생회장단은 본회 차원의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을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회원 전체의 명의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총학생회장단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소송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3절 중앙운영위원회

제35조 【지위 및 구성】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체학생대의원회의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임 의결기구이다.

- ②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 【의장】 중앙운영위원회는 의장 1인을 둔다.

제37조 【회의】 ①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소집 요건은 세칙으로 정한다.

- ②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세칙에 따라 회의의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의결요건】 중앙운영위원회는 회칙 또는 세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 【안건 발의】 ① 중앙운영위원과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② 본회 회원은 연서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③ 안건 발의 요건과 절차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40조 【세칙·규칙】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세칙 제·개정안을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세칙에 따라 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

제41조 【집행기구】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집행기구 및 전문기구의 사업 계획 및 진행 상황,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심의 및 조정한다. 단, 집행기구 및 전문기구의 신속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학생회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 및 심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집행기구 및 전문기구의 결정 및 집행 사항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제42조 【특별기구】 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기구의 설치를 심의하고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인준을 받는다. 단, 신속한 특별기구의 활동을 위하여 설치를 의결하고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사후 인준을 받을 수 있다.

제43조 【예산안·결산보고서】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예산안과 결산보고서를 심의·확정한다.

- ② 회원 스스로 중심이 되는 본회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흥·장려하고 학내 자치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자치제를 시행하며, 실시·지원 여부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4장 집행기구

제1절 총학생회장단

제44조 【지위】 ① 총학생회장단은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②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고, 총학생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총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 【역할】 ① 총학생회장단은 학생총회,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등 의결기구를 운영한다.

② 총학생회장단은 본회 사무의 집행을 총괄한다.

제46조 【의무】 ① 총학생회장단은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총학생회장단은 본회의 대표로서 학생총회,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본회의 제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학생회장단은 본회 및 본회 산하 기구의 각종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 【총학생회장단 선거】 ① 총학생회장단은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② 총학생회장단 선거에는 총학생회장 후보와 부총학생회장 후보 각 1인이 조를 이루어 입후보한다.

③ 총학생회장단 후보가 한 조인 경우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당선될 수 없다.

④ 총학생회장단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총학생회 정회원이고 선거일 현재 학사과정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⑤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8조 【선거 시행】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임기 만료 50일 이전에 실시하며,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30일 이전에 선거 절차 및 후보자 등록에 대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총학생회장단이 탄핵 등의 이유로 결위되고 잔임 기간이 150일 이상일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시행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49조 【인수인계】 총학생회장단은 후임 총학생회장단의 선출 및 후임 총학생회장단으로의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져 후임 총학생회장단의 업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50조 【선서】 총학생회장단은 임기 중 처음 개최되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회칙을 준수하고 총학생회와 회원의 권익을 수호하며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자치의 정신으로 총학생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여 총학생회장단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포항공과대학교의 모든 학우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51조 【임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단, 보궐선거로 당선된 총학생회장단의 경우에는 당선이 공고된 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본다.

제52조 【비상대책위원회】 ① 총학생회장단 2인 모두가 결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며 중앙운영위원회 대신 기능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53조 【발의권】 총학생회장단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을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별도의 요건 없이 발의할 수 있다.

제54조 【직속위원회】 총학생회장단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의 효율적 업무 집행을 위하여 직속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5조 【기구운영참여】 총학생회장단은 본회 모든 산하 기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사를 표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구의 회의에 참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6조 【학교운영참여】 총학생회장단은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되는 제반 학교 행정의 문제에 관하여 회원의 의사를 대변하여 학교 당국에 의사를 개진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회의에 참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7조 【대외활동】 ① 총학생회장단은 본회 및 본회 회원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본회를 대표하여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등의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 차원의 연대 단체 가입 및 대외적 협의, 본회의 재정적 지출을 수반하거나, 본회의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총학생회장단 차원의 대외활동은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절 중앙집행위원회

제58조 【지위】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구로, 본회 산하 기구의 집행을 감독하여 본회 사무 전반을 관리하고 담당한다.

제59조 【중앙집행위원】

① 총학생회장단은 필요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거쳐 중앙집행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총학생회장단은 중앙집행위원회의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중앙집행위원 중 1인을 중앙집행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때, 총학생회장단은 사무·집행에 관한 일부 권한을 중앙집행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자치기구

제60조 【자치기구 일반】 ① 자치기구는 상시적 대의 수렴과 학생사회의 민주적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상임 기구이다.

② 자치기구의 종류는 세칙으로 정한다.

③ 자치기구는 자치 규칙과 내규의 제·개정권을 가진다.

④ 자치기구는 자치 규칙에 따라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 회장(단)과 최고의결기구인 총회를 둔다.

⑤ 기타 자치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6장 전문기구

제61조 【전문기구 일반】 ① 전문기구는 연속성이 필요한 특수한 영역과 기능을 전담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목표로 설치된 상임 기구이다.

- ② 전문기구의 종류는 세칙으로 정한다.
- ③ 전문기구는 자치 규칙과 내규를 제·개정하여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 ④ 전문기구는 자치 규칙에 따라 선출된 위원장을 둔다.
- ⑤ 전문기구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인준한다.
- ⑥ 기타 전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7장 언론기구

제62조 【언론기구 일반】 ① 언론기구는 회원들에게 본회 내외의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상임기구이다.

- ② 언론기구의 종류는 세칙으로 정한다.
- ③ 언론기구는 자치규칙과 내규의 제·개정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 ④ 언론기구는 자치규칙에 따라 선출된 위원장을 둔다.
- ⑤ 기타 언론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63조 【권한과 의무】

- ① 언론기구의 활동에 대한 외부의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② 언론기구는 의결기구의 승인을 통해 총학생회 명의로 학교 당국에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언론기구는 본회 산하의 모든 회의에 참관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언론기구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장 특별기구

제64조 【특별기구 일반】 ① 특별기구는 특수한 영역과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비상임 독립 기구이다.

- ② 특별기구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세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문기구로 전환할 수 있다.
- ③ 기타 특별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9장 회칙 개정

제65조 【발의】 회칙 개정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 1. 회원 100인 이상의 연서에 따른 발의
- 2.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발의
- 3. 재적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에 따른 발의

제66조 【개정안 공고】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면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신·구문 대비표
3. 제65조에 따른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

제67조 【의결】 ① 회칙 개정이 발의된 경우,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의장은 제66조에서 규정한 공고 기간 후 지체 없이 전체학생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 회칙 개정안의 학생총투표 부의를 심의·의결한다.

② 회칙 개정안 부의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칙 개정안이 총학생회장단 선거권자 3분의 1 이상의 찬성 및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을 경우 회칙 개정은 확정된다.

제68조 【공포】 ① 회칙 개정이 확정된 경우, 총학생회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한다.

② 회칙의 공포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신·구문 대비표
3. 제65조에 따른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

부 칙 <2019.12.01>

제1조 【시행일】 ① 본 회칙은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단, 총학생회칙 개정에 관한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는 2020년 1차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이후 시행한다.

② 2020년 1차 전체학생대의원회의까지의 총학생회칙 개정은 「의결기구세칙」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를 따른다.

제2조 【준비행위】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본 회칙 시행 전에 본 회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 단, 해당 세칙은 본 회칙의 시행일에 제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규정】 ① 본 회칙 시행 당시의 본회의 각 기구 대표 및 임원은 본 회칙에 의하여 선출·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본 회칙 시행 당시에 이미 행해진 본회 차원의 연대단체 가입·탈퇴, 대외적 협의, 총학생회장단 및 본회 집행기구 차원의 대외활동은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